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8. 19.(목) 총 9매(본문 2, 참고 7)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이재영, 사무관 장유경, 주무관 황유영 • ☎ (044)200-5310, 5315, 5317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보호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롱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추가지정하기로 하였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롱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빨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종을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서식실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라며 “일반 국민들께서도 해양보호생물과 그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10월 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전화: 044-200-5315, 5317 / 팩스: 044-200-5309)
-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s://opinion.lawmaking.go.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해양보호생물 신규지정 5종 특성

분 류 명	특 성
<p>① 큰돌고래 <i>Tursiops truncatus</i></p>  <p>- CITES 부속서 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특성) 20마리 이하의 소규모 무리가 대부분이나 수백 마리 이상의 무리도 발견된다. 다른 고래 무리와 어울리기를 좋아해 동해에서도 흑범고래와 같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전 세계적으로 혼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목시조사를 통해 직접 관찰된 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체군 증가 감소에 대한 자료가 적다. ○ (서식 특성) 북위 60도, 남위 45도 사이의 온대와 열대 수역의 외해, 연안, 내만 등에 두루 분포한다. 국내 모든 수역에서 출현하나 주로 동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한편, 동해에 서식하는 집단과 일본 열도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② 발콩게 <i>Scopimera longidactyl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특성) 국내 달랑게과 엽낭게속 3종(엽낭게, 눈콩게, 발콩게) 중 제2 견는다리가 가장 긴 종이다. ○ (서식 특성) 우리나라 서해안의 모래갯벌 중 상부지역, 특히 무안지역의 황토성분이 섞인 굵은 모래지역에 서식한다. 과거 문헌에는 서,남해의 10여 곳에 서식기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2곳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다.
<p>③ 빨강해면맨드라미 <i>Chromonephthea hirota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특성) 붉은색을 띠는 폴립을 가지며 몸체는 짙은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버섯 모양을 하고 있다. 조하대 수심 10~30m 수직 암벽 또는 경사진 암반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며, 성별은 암수딴몸으로 여름철인 7~8월에 생식선이 성숙한다. ○ (서식 특성) 국내에서는 남해안에만 일부 서식하는 대표 연산호류로 최근 서식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수온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남해안 일대의 자연환경 변화로 인해 가거도를 비롯한 대규모 군락지가 최근 2-3년 내 사멸하는 등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분 류 명	특 성
<p>④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p>  <p>- IUCN 적색목록 취약종(VU)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특성) 몸길이 약 30 cm로 날개는 약 27~30 cm 정도이고, 여름에는 머리가 검은색을 띠고, 겨울에는 흰색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목과 배부분 및 꼬리는 흰색을 띠고 부리는 검은색이며, 흰색의 눈테가 있다. 외형적으로 암수가 동일하나, 몸 크기는 수컷이 암컷보다 다소 크다. ○ (서식 특성)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분포하며, 국내의 경우에는 서해안 일부지역에서 번식하며 서남해안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갯벌로 이루어진 해안과 바다와 접한 강 하구에서 서식한다.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습성이 있으며 수습에서 수백개체의 무리로 움직일 때도 있다.
<p>⑤ 빨제비갈매기 <i>Thalasseus bernsteini</i></p>  <p>- IUCN 적색목록 위급종(C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특성) 머리 끝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흰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는 검은색을 띤다. 부리의 대부분은 주황빛 노랑색을 띠며, 부리끝이 검은색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서식 특성)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 등지에서만 번식하며 현재까지 100개체 미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서해안 칠산도(육산도)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섬 지역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식기 인근 해양과 연안에서 취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2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개정안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

1. 포유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귀신고래	<i>Eschrichtius robustus</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심필요종
2	남방큰돌고래	<i>Tursiops aduncus</i>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근접종
3	대왕고래	<i>Balaenoptera muscu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4	보리고래	<i>Balaenoptera boreali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5	북방긴수염고래	<i>Eubalaena japonica</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6	브라이드고래	<i>Balaenoptera edeni</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정보부족종
7	상괘이	<i>Neophocaena asiaorientali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8	참고래	<i>Balaenoptera physa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9	향고래	<i>Physeter macrocepha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
10	흑등고래	<i>Megaptera novaeangliae</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11	범고래	<i>Orcinus orca</i>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정보부족종
12	흑범고래	<i>Pseudorca crassidens</i>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근접종
13	큰돌고래	<i>Tursiops truncat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14	고리무늬물범	<i>Pusa hispida</i>	IUCN 관심필요종
15	띠무늬물범	<i>Histiophoca fasciata</i>	IUCN 관심필요종
16	점박이물범	<i>Phoca largh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IUCN 관심필요종
17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취약종
18	바다사자	<i>Zalophus japonicus</i>	IUCN 절멸종
19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위기근접종

2. 무척추동물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갯게	<i>Chasmagnathus convex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	남방방게	<i>Pseudohelice subquadrat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3	눈콩게	<i>Scopimera bitympana</i>	
4	달랑게	<i>Ocypode stimpsoni</i>	
5	두이빨사각게	<i>Perisesarma bidens</i>	
6	붉은발말뚝게	<i>Sesarmops intermedi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7	흰발농게	<i>Austruca lacte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8	발콩게	<i>Scopimera longidactyla</i>	
9	의염통성게	<i>Nacospatangus alt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0	기수갈고둥	<i>Clithon retropict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	나팔고둥	<i>Charonia lampa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12	대추귀고둥	<i>Ellobium chinense</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정보부족종
13	금빛나팔돌산호	<i>Tubastraea coccine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CITES II
14	둔한진총산호	<i>Euplexaura crass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5	망상뿔시산호	<i>Echinogorgia reticulat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6	미립이분지돌산호	<i>Dichopsammia granulosa</i>	CITES II
17	별혹산호	<i>Verrucella stellat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8	깃산호	<i>Plumarella spinos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9	유착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cribros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CITES II
20	잔가지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ijima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CITES II
21	착생깃산호	<i>Plumarella adhaeran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2	촉뿔시산호	<i>Echinogorgia complex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3	검붉은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suenson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4	밤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castane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5	연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molli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6	자색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putter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7	흰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alb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8	빨강해면맨드라미	<i>Chromonephthea hirotai</i>	
29	긴가지해송	<i>Myriopathes lata</i>	천연기념물 제457호 CITES II
30	망해송	<i>Antipathes dubia</i>	CITES II
31	빚자루해송	<i>Antipathes densa</i>	CITES II
32	실해송	<i>Cirripathes anguina</i>	CITES II
33	해송	<i>Myriopathes japonic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CITES II
34	선침거미불가사리	<i>Ophiacantha line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35	유사벌레불이말미잘	<i>Synandwackia multitentaculata</i>	
36	흰이빨참갯지렁이	<i>Paraleonnates uschakovi</i>	

3. 해조류(해초류를 포함한다)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거머리말	<i>Zostera marina</i>	IUCN 관심필요종
2	게바다말	<i>Phyllospadix japonicus</i>	IUCN 멸종위기종
3	삼나무말	<i>Coccolophora langsdorfi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4	새우말	<i>Phyllospadix iwatensis</i>	IUCN 취약종
5	수거머리말	<i>Zostera caulescens</i>	IUCN 위기근접종
6	왕거머리말	<i>Zostera asiatica</i>	IUCN 위기근접종
7	포기거머리말	<i>Zostera caespitosa</i>	IUCN 취약종

4. 파충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매부리바다거북	<i>Eretmochelys imbricata</i>	CITES I IUCN 심각한위기종
2	붉은바다거북	<i>Caretta caretta</i>	CITES I IUCN 취약종

3	장수거북	<i>Dermochelys coriacea</i>	CITES I IUCN 취약종
4	푸른바다거북	<i>Chelonia mydas</i>	CITES I IUCN 멸종위기종
5	올리브바다거북	<i>Lepidochelys olivacea</i>	CITES I IUCN 취약종

5. 어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고래상어	<i>Rhincodon typus</i>	CITES II IUCN 멸종위기종
2	홍살귀상어	<i>Sphyrna lewini</i>	CITES II IUCN 심각한위기종
3	가시해마	<i>Hippocampus histrix</i>	CITES II IUCN 취약종
4	복해마	<i>Hippocampus kuda</i>	CITES II IUCN 취약종
5	점해마	<i>Hippocampus trimaculatus</i>	CITES II IUCN 취약종

6. 조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26호 IUCN 위기근접종
2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IUCN 심각한위기종
3	노랑부리백로	<i>Egretta eulophote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천연기념물 제361호 IUCN 취약종
4	바다쇠오리	<i>Synthliboramphus antiquus</i>	IUCN 관심필요종
5	바다오리	<i>Uria aalge</i>	IUCN 관심필요종
6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IUCN 위기근접종
7	빨쇠오리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취약종
8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i>	IUCN 관심필요종
9	슴새	<i>Calonectris leucomelas</i>	IUCN 위기근접종
10	아비	<i>Gavia stellata</i>	IUCN 관심필요종
11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멸종위기종
12	저어새	<i>Platalea minor</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천연기념물 제205-1호 IUCN 멸종위기종
13	청다리도요사촌	<i>Tringa guttifer</i>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CITES I IUCN 멸종위기종
14	흰수염바다오리	<i>Cerorhinca monocerata</i>	IUCN 관심필요종
15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취약종
16	빨제비갈매기	<i>Sterna bernsteini</i>	IUCN 심각한위기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정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법적 규제사항) 위 같은 법률 제20조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 1.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2.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 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더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